

『easy-one 외화송금서비스』 이용 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0년 5월 21일

2. 개정내용 : 면책조항 문구 수정 , 송금문구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1조 목적(생략)	제1조 목적(현행과 동일)	
제2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(생략) 1.중여성 송금: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, 다만, 건당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 2.해외체재자/ 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송금: (생략) 3.외국인근로자 보수송금: (생략) 4.국내이체: (생략) ②생략	제2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 ① (현행과 동일) 1.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: (현행과 동일) 2.해외체재자/ 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송금: (현행과 동일) 3.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: (현행과 동일) 4.국내이체: (현행과 동일) ②(현행과 동일)	송금문구 변경 중여성 송금->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외국인근로자 보수송금-> 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
제3조~제12조 (생략)	제3조~제12조 (현행과 동일)	
제 13조 면책 ① <u>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 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 부터 반환되는 경우 등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</u> ② <u>은행은 천재지변,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 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</u> ③ <u>제 6조 제 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송금요건이 미비 등 은행이 책임 없는 사유로 송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</u>	제 13조 책임 ① <u>은행은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 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</u> ② <u>은행은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u> ③ <u>은행은 제 6조 제 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송금요건의 미비 등 은행의 귀책 없는 사유로 송금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	면책조항 문구 수정
제14조~제15조 (생략)	제14조~제15조 (현행과 동일)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